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 건명: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
-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김*영	1977.04.02.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동일사업주(경기도교육청 소재 공립학교) 취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폐문부재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31 (이하 생략)

- 공고 기간: 2024.04.02.~2024.04.16.(15일간)
- 기타 사항은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이영순(☎ 02-2142-85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